

서 면 답 변 서

○ 강감창 의원

(질의요지)

-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 먼저 자전거도로 관련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
 - 가칭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관한 시방서 마련하여 향후 자전거도로 포장 및 정비에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

(답 변)

- 자전거도로 포장재 설치현황
 - 차도 : 아스팔트 포장, 일부분 유색포장(적색, 녹색) 도포 등
 - 보도 : 투수콘, 깔라 보도블록 등
 - 한강 : 아스팔트, 투수콘(적색, 녹색), 마사토 포장 등
 - 지천 : 투수콘(적색, 녹색) 등
- 자전거도로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 금년 3월 13일 우리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을 제정하여 차도상에 설치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계하는데 이용하고 있음
 - 차도상 자전거전용도로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 그대로 활용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례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등을 수립하여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임
 - 따라서, 자전거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관련법과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고
 - 자치구에도 정기적으로 자전거 관련시설을 점검, 순찰하도록 통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 자전거도로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우리시에 설계용역 및 기술심의를 위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자전거교통추진반에서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시 활용하고자 함
-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관한 시방서 마련과 관련하여

- 자전거도로 포장은 차도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포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포장이 적용되고 있음
- 차도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포장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 등 각 기관에서 제시한 시방서가 제시되어 있음
- 그외 하천, 공원 등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수지계 포장, 도막바닥 포장, 황토 포장, 블록 포장)은 각각의 재료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일된 시방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통일된 시방기준보다 각각의 자전거도로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시 어떤 포장공법을 선택할 것인지 발주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시공중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전문책임감리의 감리하에 정밀 시공을 유도하고 있음
- 추후 통일된 시방기준 마련을 위한 “자전거도로 포장 품질기준 및 시방에 관한 연구”를 학술용역으로 내년에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자 함
 - 수지계 포장(조달청에 35개 등록)
 - 도막바닥 포장(조달청에 25개 등록)

※ 별첨 : 자전거도로 포장관련 법령 내용. 끝.

별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 ①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 내지 2.0퍼센트의 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

자전거전용도로의 포장 색깔은 분리대·연석·방호울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시인성을 높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횡단보도 전·후 등에는 포장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